[별지서식 제1호 앞면] 본 광고사전검토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.

<table>
<tr><td>접수번호</td><td colspan="4" rowspan="2">광고사전자율심의신청서</td><td>처리기간</td></tr>
<tr><td>01-01-P-1600456</td><td>7일</td></tr>
<tr><td>신청자명</td><td>(주)올컴미디어</td><td>대표자</td><td>김종기</td><td>사업자등록번호</td><td>104-86-48071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신청자주소</td><td colspan="3" rowspan="3">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세종대로20길 23, 원창빌딩 801호</td><td rowspan="3">연락처</td><td>담당자명: 김태곤</td></tr>
<tr><td>연락처: 010-2736-9938</td></tr>
<tr><td>팩스: 02-752-7914</td></tr>
<tr><td>광고 상품명</td><td>좋은라이프</td><td>광고주명</td><td>좋은라이프</td><td>광고매체</td><td>신문 (A안)</td></tr>
<tr><td>대행사명</td><td>올컴미디어</td><td>제작자명</td><td>오엠오컴퍼니</td><td>심의구분</td><td>초심 O
수정심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검토의견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수정 및 삭제 요망 사항
1. 計告 – 삭제
2. 상조업계 자본금 1위, 4년연속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, 대한민국우수기업대상 – 기간 및 주최기관 명기, 입증 요망
3. 공정거래위원회고시 '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'에 따라 상조업종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명기 요망
타 기관의 로고 사용 문제는 사용동의에 관한 당사자들의 문제로서 본 기구와는 무관하며, 이 부분은 배제하고 광고물 검토하였음을 밝힘. 끝.</td></tr>
<tr><td>변경내용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/table>

광고물의 사전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.

2016년 11월 1일
신청인 (주)올컴미디어

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중

심의의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**2016년 11월 4일**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
	심의번호	16-P1-11-1	
	기타	검토의견 이행이 필요한 조건부 적합 광고물임	

※ 주의사항은 뒷장에 첨부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서식 제1호 뒷면] 본 광고사전검토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.

광고 이미지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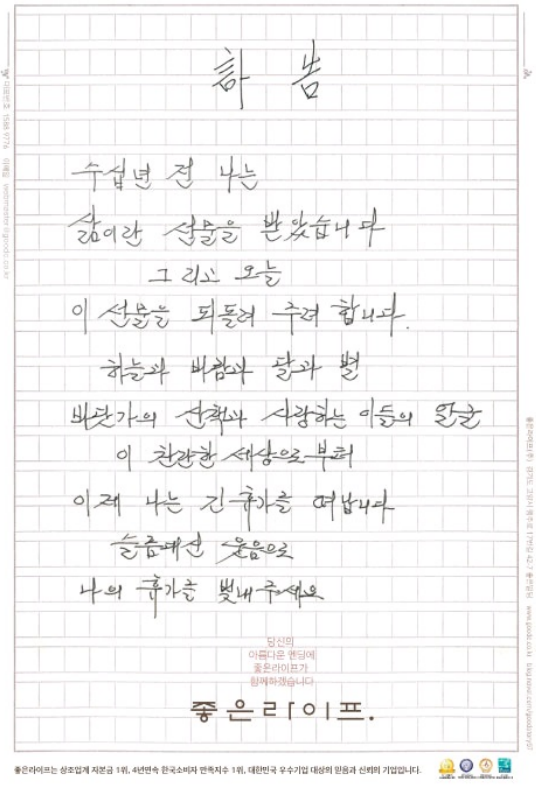

기타		면번호	2

심의의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2016년 11월 4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
	심의번호	16-P1-11-1	
	기타	검토의견 이행이 필요한 조건부 적합 광고물임	

※ 필증 사용시 주의사항

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② 원하실 경우,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 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<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전검토필 심의번호> 문구로 한정하며, 기구 로고 필요 시 사무처에 별도 문의바랍니다.
③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은 불허합니다.
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.
⑤ 필증을 위·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.
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(02-2144-4300/4304)로 연락 바랍니다.